

의안 번호	743	【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의결의 건】 검 토 보 고
----------	-----	---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· 제출자 : 2010. 2. 9 ·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0. 2. 11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0. 2. 23(화)

2. 제안이유

- 가. 새마을운동울산광역시중구지회가 2008. 11. 28자로 법인으로 설립됨에 따라 변경된 명칭을 반영하고,
- 나.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」에 맞도록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가. 제명 띄어쓰기
 - 「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」
⇒ 「울산광역시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」
 - 나. 법인 설립에 따른 명칭 변경(안 제4조)
 - 새마을운동울산광역시중구지회장 ⇒ 사단법인 울산중구새마을회장
- 다.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」에 따른 일부 조문 정비

4. 근거법규 : 법제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」

5. 개정조례안 및 신규조문 대비표 : 따로 붙임

6. 참고사항 : 입법예고 의견없음(2009. 11. 2 ~ 11. 23)

7. 검토의견 : 의견없음

신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명 :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장학금지급 조례	제명 : 울산광역시중구 새마을장학금지급 조례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지도자(“새마을 부녀회장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” 이하 같다)의 고등학생 자녀에게 지급 하는 <u>새마을장학금(이하 “장학금”이라 한다)</u> 의 지급에 <u>관하여</u>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--- 새마을장학금----- ----- <삭 제>----- -----.
제2조(장학금의 종류) 장학금의 종류는 유공자 장학금, 우등생 장학금 및 특 기생 장학금으로 구분한다.	제2조(장학금의 종류) 새마을장학금 (이하 “장학금”이라 한다)----- -----.
제3조(장학생의 자격) ① 새마을장학생 (이하 “장학생”이라 한다)은 새마을운 동에 2년 이상 봉사한 남·여 새마을 지도자 자녀로서 <u>다음 각호의 1에</u>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 다만 유공자는 새마을지도자 경력 2년 이 상일 것을 <u>요하지 아니한다.</u> 1. ~ 2.(생략) 3. 특기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<u>기능, 체육 및 예능</u> 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② 제1항의 각 호 자격요건을 갖춘 때 에도 새마을지도자 <u>1인</u> 에 대하여 <u>1자</u> <u>녀</u> 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, 기업체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지급 받은 자는 제외한다.	제3조(장학생의 자격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다음 각 호의 어느</u> <u>하나에</u> ----- ----- ----- <u>필요로 하지 아니한다.</u> 1. ~ 2.(현행과 같음) 3. ----- <u>기능·체육 및 예능</u> ----- ----- ② ----- ----- <u>한 명</u> ----- <u>한 자녀</u> ----- -----.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추천 및 선발) ①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새마을지도자동협의회장과 동장의 공동 추천을 받아 <u>새마을운동을</u> <u>산광역시중구지회장(이하 “지회장”이라 한다)</u>이 울산광역시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과 협의하여 선정한다. 다만, <u>지회장은 구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</u> 및 부녀회장, 문고지부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</p> <p>② <u>지회장</u>이 장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학교장의 추천서를 참작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·확정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상훈법</u>에 의한 상순위의 새마을유공 서훈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2. ~ 3.(생략) 4. <u>기타 선정당시</u> 결정 순위 	<p>제4조(추천 및 선발) ① ----- ----- -----<u>사단법인 울산중구새마을회장(이하 “회장”이라 한다)</u> ----- -----<u>회장--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</u> ----- -----.</p> <p>② <u>회장</u>----- 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「<u>상훈법</u>」----- ----- 2. ~ 3.(현행과 같음) 4. <u>그 밖에 선정 당시</u> 결정 순위
<p>제8조(지급 및 정지) ① 장학금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<u>다음 각호의 1에</u>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<u>당해</u>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~ 4.(생략) <p>② <u>지회장</u>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/p>	<p>제8조(지급 및 정지) ① ----- -----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</u> -----<u>해당</u>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~ 4.(현행과 같음) <p>② <u>회장</u>----- ----- -----.</p>
<p>제10조(규칙) 이 조례 시행에 <u>관하여</u>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10조(규칙) -----<삭 제> -----.</p>